

14-자-2. 대학별 평가 인증 현황

■ 공시지침

【공시기관】 : 대학

【공시시기】 : 수시(인증 기간 (갱신)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)

※ 인증 기간 (갱신)시작일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결과 통보받은 공문(평가인증 결과 통보 등)에 명시된 인증 기간 시작일

※ 다만, 갱신된 인증 현황 중 시작일 변동이 없는 경우(연장, 축소 등) 변동 발생일(공문 수신일)로부터 30일 이내 공시

※ 조건부인증으로 이의신청할 경우, 조건부인증 결과 통보받은 공문에 명시된 인증 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먼저 공시 후, 추후 인증 결과에 따라 수정 공시

【공시내용】 : 대학 기관 인증 평가 결과 및 교육부로부터 지정받은 프로그램(학문분야) 인증 결과

【공시양식】 : 다음 양식 적용

기준연도	학교명	학과(부)명	인증 분야	인증프로그램명	인정기관	인증 유효 기한

■ 작성지침

【대학별 평가 인증 현황】 :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(평가 등)에 근거하여 대학의 평가 인증 결과 공시

※ 인증이 당해연도 종료될 경우, 당해연도까지는 해당 인증 현황 공시. 단, 차년도 공시가 시작되는 시점에 삭제
(예: 간호학 인증이 갱신 없이 2023. 6. 30자로 종료될 경우, 2023년까지는 공시 유지. 2024년 공시부터 삭제)

【학교명】 : 교육과정 프로그램 및 기관 인증을 획득한 학교명

【학과(부)명】 :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육과정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한 학과(부)명

※ 대학 기관 인증의 경우 음영처리됨

【인증 분야】 : 간호학, 건축학, 경영학, 공학, 의학, 치의학, 한의학, 보건의료정보관리학, 약학, 기관 인증

【인증프로그램명】 : 간호학 학사학위, 건축학 학사 등 인정기관에서 획득한 교육과정 프로그램명

※ 대학 기관 인증의 경우 음영처리됨

【인정기관】 :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은 교육과정 및 기관 평가 인증기관

【인증 유효 기한】 : 기준일자가 포함된 교육과정 프로그램 및 기관 인증의 유효 기한

참고

※ 고등교육법 [시행 2019.1.1] [법률 제15948호, 2018.12.18, 일부개정]

제11조의2 (평가 등)

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, 조직과 운영,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인정기관”이라 한다)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(학부·학과·전공을 포함한다)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. 다만, 의학·치의학·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5.12.22>

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,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,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.

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,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7.21.]

■ 참고사항

-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